관내사전투표함 보관등

1 관내사전투표함 보관

○ 사전투표함이 구·시·군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추천위원이 사전투표함의 봉쇄·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.

○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송과정에 훼손이 된 것이 발견되면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직접 보완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.

○ 이상이 없거나 보완이 끝나면 사전투표함을 CCTV 및 보안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의 출입문을 사무국(과)장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합니다.

○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되며,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.

Q. 관내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 보관장소를 열람할 수 있나요?

▸ 시·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24시간 확인 가능하며, 중앙 및 구·시·군선관위에서는 열람 신청 후 근무시간 중(공휴일 포함)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이 지정한 1인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야간 열람 가능)

Q.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녹화영상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?

▸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녹화영상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며, 영상 보관기간 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영상을 열람(비용발생)할 수 있습니다.

2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· 우편투표함 투입

○ 구·시·군선관위는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하면, (정당추천)위원의 참여하에 수령한 회송용봉투수와 배달증에 기재된 통수 확인, 타 지역 우편물 혼입 여부 등을 확인 후 접수합니다.

○ 접수한 회송용봉투는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, 정당추천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 덮개를 재봉인합니다.

○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시마다 정당추천위원이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투표함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.

3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

○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정당추천위원과 정당·후보자별 1명의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관내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의 출입문을 열어 투표함의 봉쇄·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.

○ 개표참관인은 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·시·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.

○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, 정당·후보자별로 신고한 개표참관인 각 1명, 경비 경찰 2명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.